



제 417회 국회 (임시회)
제7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14세 미만 아동의 SNS 이용 금지〉

■ 윤건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1798호)

2024. 8.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건오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14세 미만 아동의 SNS 이용 금지(안 제44조의11 신설)	3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윤건영의원 등 25인

나. 발 의 일 : 2024. 7. 16.

다. 회 부 일 : 2024. 7. 17.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이하 “SNS”라 한다)가 아동의 지능·인지·정신건강 발달에 악영향을 끼치고 아동을 유해·불법 콘텐츠와 사이버 불링(괴롭힘)에 무방비로 노출시킨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따라 SNS도 술·담배처럼 경고 문구를 표시해야 한다는 등 SNS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전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음.

미국 플로리다 주는 14세 미만 아동에 SNS 이용을 금지하는 법을 공포했고 유타·오하이오 주는 각각 18세·16세 미만 아동이 SNS를 사용하는 경우 부모의 동의를 받는 법을 통과시킨 바 있음. 영국 또한 13세 미만 아동에 대해 SNS 계정 만드는 것을 제한하는 법을 두고 있음. 심지어 프랑스 정부의 용역보고서는 18세 미만 아동에 대한 SNS 사용 금지를 제안한 바 있음.

일각에서는 우리나라도 SNS로부터 아동을 보호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한국언론진흥재단이 공개한 2022년 10대 청소년 미디어 이용 조사 결과에 따르면, 10세에서 13세 아동이 인터넷 미디어를 사용하는 시간이 2019년 기준 하루 평균 2시간 40분에서 2022년 5시간

40분으로 크게 증가하는 등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이에 정부가 사회관계망서비스 유해매체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사업자에게는 회원가입 신청자가 14세 미만 아동인 경우 승낙을 거부함으로써 SNS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44조의11 신설).

Ⅲ. 검토의견

1. 14세 미만 아동의 SNS 이용 금지(안 제44조의11 신설)

가. 개정안 요지

- 정부는 사회관계망서비스 유해매체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안 제44조의11 제1항).
- 사회관계망서비스사업자는 회원가입을 신청하는 자의 연령을 확인하여 14세 미만인 경우 회원가입 승낙을 거부하여야 함(제2항 및 제3항).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설>	제44조의11(사회관계망서비스에 서의 아동 보호) ① 정부는 사 회관계망서비스 유해매체물로 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정 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사회관계망서비스(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 을 하거나 정보를 공유하는 서 비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말한다)를 제

현행	개정안
	공하는 자(이하 “사회관계망서비스사업자”라 한다)는 아동 보호를 위하여 자신이 제공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사람이 회원가입을 신청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사회관계망서비스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연령을 확인하여 회원가입을 신청한 사람이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제1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14세 미만인 경우 : 회원가입 신청에 대한 승낙 거부 ④ 제3항제1호의 조치의 방법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 검토사항

- 스마트폰의 보급 확산 등에 따라 아동¹⁾의 대다수가 인터넷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발하게 이용하고 있음.

1) 개정안에 따른 14세 미만은 「아동복지법」상 ‘아동’(18세 미만)과 「청소년 기본법」 및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각각 9세 이상 24세 미만, 19세 미만)에 모두 해당될 수 있으나, 이 글에서는 외부 자료를 인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정안에 따른 용어인 ‘아동’으로 통일함.

- 한국언론진흥재단의 「2022년 10대 청소년 미디어 이용 조사」에 따르면, 2022년 기준 10대 청소년의 SNS 이용률은 78.1%에 달하여 2019년 대비 13.4%p 증가함²⁾.
- 그런데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가 아동의 인지 및 정서, 대인관계 등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 미국 공중보건서비스단(PHSCC)에 따르면, 하루 3시간 이상 SNS를 사용하는 청소년은 우울증과 불안 등 정신건강이 악화될 위험이 2배 높아짐³⁾.
 - 또한 2024년 1월 미국 연방 상원에서 ‘빅테크와 온라인 아동 성 착취’를 주제로 열린 청문회에서는 SNS가 아동 보호를 위한 책임을 다하고 있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으며,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메타(Meta)의 CEO인 마크 저커버그가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기도 하였음.
- 이에 세계적으로 아동의 SNS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입법이 제정·추진 중인 상태임.
 - 미국 플로리다주는 14세 미만 아동의 SNS를 금지하고, 14세에서 15세 사이 아동의 경우 SNS에 가입하려는 경우 부모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법률을 제정하였고⁴⁾,
 - 유타주와 오하이오주는 각각 18세·16세 미만 아동이 SNS에

2) 한국언론진흥재단, 「2022 10대 청소년 미디어 이용조사」, p.102

3) 한국일보, ‘미국 공중보건당국 “아동·청소년 소셜미디어 사용, 치명적 위험”’, 2023.5.24.

4) 연합뉴스, ‘美플로리다주, 내년부터 14세 미만 SNS 계정 보유 금지’, 2024.3.26.

가입하는 경우 부모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법률을 제정하는 등 미국 23개 주에서 아동 SNS 제한 관련 법률이 통과됨.

- 그 밖에 호주, 영국, 프랑스 등에서도 아동의 SNS 제한 또는 금지를 위한 조치를 검토 중임⁵⁾.

○ 이러한 최근의 추세 및 세계적 입법 동향 등을 고려할 때, 아동의 SNS 사용 금지 등을 통해 SNS가 초래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려는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할 수 있는 측면이 있음.

○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신중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정부의 SNS 유해매체물 관련 아동 보호 정책 수립·시행

○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제41조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음란·폭력정보 등 청소년에게 해로운 정보(“청소년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음⁶⁾.

5) 세계일보, “‘청소년에게 해로워’... ‘미성년 SNS 금지’ 규제의 칼 뽑았다”, 2024.7.27.

6) 제41조(청소년 보호를 위한 시책의 마련 등)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음란·폭력정보 등 청소년에게 해로운 정보(이하 “청소년유해정보”라 한다)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내용 선별 소프트웨어의 개발 및 보급
2. 청소년 보호를 위한 기술의 개발 및 보급
3. 청소년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

- 개정안에 따른 ‘사회관계망서비스 유해매체물’은 청소년유해정보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안 제44조의11 제1항이 현행 제41조와 중복되는 것이 아닌지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 방송통신위원회는 현행 정보통신망법 제41조에서 청소년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개정안은 해당 조항과 중복되는 내용으로 법 개정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 SNS 사업자의 가입 신청자 연령확인 및 14세 미만에 대한 가입 승낙 거부 의무

- 첫째, 아동의 SNS 사용을 전면 금지를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과 이에 따른 아동의 권리 제한 사이의 비교형량이 필요해 보임.
- 아동의 SNS 사용에는 유해콘텐츠 노출, 사이버 괴롭힘 등 역기능도 있으나, 동시에 정보의 습득, 대인관계 형성 및 강화와 같은 순기능도 존재함.
 - 한국언론진흥재단의 「2022년 10대 청소년 미디어 이용 조사」에 따르면, 청소년들은 SNS의 다양하고 재미있는 콘텐츠(64.4%), 친구 또는 타인과의 소통(58.6%), 친구들의 최신 소식 공유(43.6%), 새로운 정보나 뉴스의 획득(40.3%) 등을 SNS 이용 사유로 꼽았으며,

4. 그 밖에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심층면접 결과 SNS에서 본 게시물이나 주제를 가지고 가족이나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는 등 SNS가 오프라인의 친밀감을 높이는 매개로 작용하고 있기도 하였음⁷⁾.

○ 또한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아동은 인격의 발전을 위하여 어느 정도 타인에 의한 결정을 필요로 하기는 하나, 부모와 국가에 의한 단순한 보호의 대상이 아닌 독자적인 인격체이며, 아동의 인격권은 성인과 마찬가지로 인간의 존엄성 및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는 헌법 제10조⁸⁾에 의하여 보호됨⁹⁾.

○ 이에 현행 정보통신망법은 아동의 SNS 사용 자체를 금지하는 대신, 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의무¹⁰⁾, 청소년 보호 책임자의 지정¹¹⁾, 불법정보 유통방지¹²⁾ 등 SNS 사용의 역기능을 방지하기

7) 한국언론진흥재단, 「2022 10대 청소년 미디어 이용조사」, p.105-106.

8) **대한민국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9) 현재 2000. 4. 27. 98헌가16등

10) **제42조(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자(이하 “정보제공자”라 한다) 중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2호마목에 따른 매체물로서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시방법에 따라 그 정보가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11) **제42조의3(청소년 보호 책임자의 지정 등)**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일일 평균 이용자의 수,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정보통신망의 청소년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청소년 보호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12)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2.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4.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하는 내용의 정보
5.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상대방의 연령 확인, 표시의무 등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내용의 정보
6. 법령에 따라 금지되는 사행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

위한 다양한 방안을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SNS의 순기능적 측면, 아동의 행복추구권과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 등을 고려하여 유해콘텐츠 범위 확대 및 규제 강화, SNS 중독·과몰입에 대한 치료 지원 등 아동의 권리를 보다 적게 침해하는 방안을 우선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 유사 입법례를 살펴보면, 인터넷게임의 경우 「청소년 보호법」과 「게임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① 게임물의 등급분류¹³⁾, ② 16세 미만 청소년의 회원가입 시 친권자 동의 요구¹⁴⁾,

6의2. 이 법 또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거래하는 내용의 정보
6의3. 총포·화약류(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폭발력을 가진 물건을 포함한다)를 제조할 수 있는 방법이나 설계도 등의 정보

7. 법령에 따라 분류된 비밀 등 국가기밀을 누설하는 내용의 정보

8.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

9. 그 밖에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敎唆)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2 및 제6호의3의 정보에 대하여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로 하여금 그 처리를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정보의 경우에는 해당 정보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그 처리의 거부·정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없다.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정보가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에게 해당 정보의 처리를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1. ~ 3. 생략

1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등급분류) ①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하게 할 목적으로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기 전에 위원회 또는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사업자로부터 그 게임물의 내용에 관하여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게임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4. (생략)

② 게임물의 등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체이용가 :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게임물
2. 12세이용가 : 12세 미만은 이용할 수 없는 게임물
3. 15세이용가 : 15세 미만은 이용할 수 없는 게임물
4. 청소년이용불가 : 청소년은 이용할 수 없는 게임물

14) 「청소년 보호법」 24조(인터넷게임 이용자의 친권자동의 동의) 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게임물 중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게임물(이하 “인터넷게임”이라 한다)의 제공자(「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자로 신고한 자를 말하며, 같은 조 제1항 후단 및 제4항에 따라 신고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회원으로 가입하

③ 이용방법·이용시간 제한 등 사업자의 과몰입 예방조치 의무¹⁵⁾, ④ 중독·과몰입 예방 및 피해 청소년 지원¹⁶⁾ 등을 규정하고 있음.

○ 참고로, 앞서 언급한 해외 입법례 중 오하이오주 법은 청소년의 온라인 정보 접근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연방법원의 판결에 따라 시행이 중지된 상태임.

○ 둘째, ‘사회관계망서비스’의 의미를 보다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어 보임.

○ 개정안은 ‘사회관계망서비스’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거나 정보를 공유하는 서비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서비스”로 정의하고 있음.

려는 사람이 16세 미만의 청소년일 경우에는 친권자등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5)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게임과몰입 예방조치 등) ① 게임물 관련사업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공중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하는 자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게임물 이용자의 게임과몰입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과도한 게임물 이용 방지 조치(이하 “예방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게임물 이용자의 회원가입 시 실명·연령 확인 및 본인 인증
2. 청소년의 회원가입 시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 확보
3. 청소년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요청 시 게임물 이용방법, 게임물 이용시간 등 제한
4. 제공되는 게임물의 특성·등급·유료화정책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게임물 이용시간 및 결제정보 등 게임물 이용내역의 청소년 본인 및 법정대리인에 대한 고지
5. 과도한 게임물 이용 방지를 위한 주의문구 게시
6. 게임물 이용화면에 이용시간 경과 내역 표시
7. 그 밖에 게임물 이용자의 과도한 이용 방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16) 「**청소년 보호법**」 제27조(인터넷게임 중독·과몰입 등의 예방 및 피해 청소년 지원)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인터넷게임 중독·과몰입(인터넷게임의 지나친 이용으로 인하여 인터넷게임 이용자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회복할 수 없는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기능 손상을 입은 것을 말한다) 등 매체물의 오용·남용을 예방하고 신체적·정신적·사회적 피해를 입은 청소년과 그 가족에 대하여 상담·교육 및 치료와 재활 등의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 그러나 정보통신망의 이용 자체가 정보의 검색 및 송·수신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¹⁷⁾, 개정안의 정의에 따르면 모든 정보통신 서비스가 사회관계망서비스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음.
- 개정안은 사업자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으로서 수익적 성격의 규정에 비해 명확성의 원칙이 더욱 엄격하게 요구되므로¹⁸⁾, 사회관계망서비스의 정의를 보다 명확하게 한정함으로써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어 보임.
- 셋째, 이미 SNS에 가입한 아동에 대한 조치방안이 분명히 규정되어 있지 않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개정안은 신규로 회원가입을 신청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업자가 연령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으나, 기존에 가입한 자에 대해서는 연령 확인 및 계정 삭제 등의 조치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 이에 따르면 법 시행 전에 이미 SNS에 가입한 아동과 시행 이후 새롭게 SNS에 가입하려는 아동 간 형평에 어긋날 우려가 있으므로, 기존 가입자에 대한 경과조치 등을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17) 정보통신망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18) 헌재 1992. 2. 25. 89헌가104

- 참고로, 앞서 언급한 미국 플로리다주 법은 14세 미만 아동의 SNS 가입을 금지하면서, 기존에 가입한 아동의 계정도 삭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방송통신위원회는 SNS 유해정보로부터 14세 미만 아동을 보호하려는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개정안에 따른 ‘사회관계망서비스’가 매우 포괄적으로 정의되어 대화형 정보통신서비스, 동영상 제공서비스, 커뮤니티 서비스 등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데,

해당 정보통신서비스들은 아동의 가정·학교에서의 연락, 친목 도모, 자아개발, 학업 등에 활용되는 등 유익한 측면도 있어 이를 전체적으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과도하므로,

중독성 동영상 콘텐츠를 제공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에 대해서만 14세 미만 아동의 가입을 제한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임.
-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① 개정안이 14세 미만 아동의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중대하게 침해할 것으로 우려되고, ② 글로벌 흐름을 살펴봐도 14세 미만 아동의 SNS 이용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며, ③ 연령 확인 절차로 인해 사업자의 비용이 증가하고 관련 서비스 산업의 위축을 가져올 수 있다는 의견을 제출함.

문 의 처

02)6788-5230